

	강의계획서, 실습계획서 관련 규정		문서번호	3-3-5		
	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	페이지	1/1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강의계획서 및 실습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본 대학에서 개설되는 모든 이론교과목, 실습교과목 및 교양교과목에 적용된다.

제3조(작성 및 제출기준) ① 강의계획서에는 과목명, 과목종별, 과목개요, 담당교수, 학점 및 시수, 학습목표, 교수학습방법, 평가체계, 도서목록, 주별 강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실습계획서에는 실습과목명, 실습과목개요, 담당교수, 학점 및 시수, 학습목표, 평가기준, 주별 강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강의계획서와 실습계획서는 학기 시작 2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.

제4조(공개기준) 강의계획서와 실습계획서는 학교 홈페이지 내 게시 등을 통하여 개설학기 수강신청기간 시작 전에 공지되어야 하며, 학기 동안 상시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